

제261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 
보건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18. 11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보건·복지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18년 11월 28일  
전문위원 김 동 영

#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2018 - 67
- 나. 제 안 자 : 이종숙 의원 외 10명
- 다. 제안일자 : 2018년 10월 31일
- 라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8일

### 2. 제안이유

- 2014년 5월 28일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가 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’ 개정되고, 부칙에서 ‘조례에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’로 규정함.
-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,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출재원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존치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○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 (안 제10조)

-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함.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생활보장과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8. 10. 31. ~ 11. 5.) 결과 : 의견 없음

### 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

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및 개정법 시행 관련 적용례에 따라 우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존치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임.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10조를 신설,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.

## 다. 종합의견

-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, 장애인 보장구비, 건강생활 유지비 등 의료급여비의 지출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.
- 종전 지방재정법<sup>1)</sup>은 존속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,
  -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’하도록 하고,
  - 부칙에서 ‘조례에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’고 규정하고 있음.
- 존속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현행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치를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<sup>2)</sup>.

- 
- 1) 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  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
- 2) 한편, 개정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 규정의 적용과 관련, ‘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례인지’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었으나, 최근 동 단서규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[시·군·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법률이 아닌 부령(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)에 근거하는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]이 접수(2018.10.23)됨에 따라, 특별회계 존치를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함.

- 이에 상위법령 및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지원과 보장성 강화 등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적법하게 발의된 조례안으로 사료됨.

붙임 관계법령 1부.

**□ 지방재정법**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
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**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 5. 28.>**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...

제4조(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.